

보 험 약 관

## 직장인 자동보험 약관

###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때로부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제 2 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 1회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내용 또는  
진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퇴직, 사망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  
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 2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 3 조 (피보험자의 자격 상실)

이 계약의 체결후 피보험자가 피보험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전직, 승진으로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별도의 신청이 있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계약자로 하여 계약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 7조 제 1항 제 2호의 퇴직 보험금은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 4 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① 회사가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 제 5 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 제 6 조 (계약의 무효)

-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② 제 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 제 7 조 (보험금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드립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때 :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중 퇴직 (당해 단체의 퇴직규정등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되는 퇴직을 말합니다)하였을때 : 퇴직보험금
  3. 보험기간중 별표 2(재해분류표)에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 보험금
  4. 보험기간중 별표 4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분류표"상의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 사망 보험금
  5. 보험기간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 사망 보험금

② 제 1항 제 3호 내지 제 5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증선고(失證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 1항에 있어서 장해분류표증 제 1급의 장해상태가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분류표증 제 1급의 장해상태 여부를 결정 합니다.

④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 제 4호 또는 제 5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제 8 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② 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드립니다.

#### 제 9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증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증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 1항 제 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 10 조(진정, 기타 변란사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sup>1</sup> 제 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산출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제 11 조(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4. 회사가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6.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 11조의 2(계약 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대리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전단확정을 받은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 12 조(보험료의 구성 및 납입)

① 이 계약의 보험료는 보장부분 보험료와 적립부분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보장부분 보험료와 적립부분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보장부분 보험료는 남, 여로 구분한 단일 연령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로 합니다.

③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 제 13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 7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 14 조(주소 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항의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 15 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계약의 효력)

- ①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재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 1항을 적용합니다.

#### 제 15 조의 2(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제 15조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에 제 22조에서 규정하는 약관대출금으로 유예기간중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입(이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라 합니다)하여 드립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로 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당해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 제 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은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집니다.

(6) 이 보험에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제 1항 내지 제 5항의 경우는 부가되어 있는 특약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제 16 조(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 1조 제 2항, 제 2조, 제 4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 합니다.

#### 제 17 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퇴직증명서 (퇴직의 경우)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 18 조(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17조에 정한 기준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기준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시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제 7조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상시기간이 1년 이내에는 정기예금이율,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정기예금이율+1%, 2년 초과 3년 이내에는 정기예금이율+1.5%의 중도 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⑥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 제 19 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바에 따라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18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 제 20 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치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8조 제 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 1항 제 3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 20조의 2(계약 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 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 제 21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제 1항의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 제 22 조(약관대출)

-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내손은 받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자유가 발생한 날에 예자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제 22조의 2(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자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제 23 조(계약자의 권리행사)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은 피보험자가 제 8조, 제 9조 제 2항, 제 15조 제 1항, 제 17조, 제 20조 제 2항, 제 21조, 제 22조의 권리인 행사를 수 있습니다.

#### 제 24 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 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25 조(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제 26 조(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등을 해드립니다.

#### 제 27 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과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제 28 조(준 시 빙)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별 표 1 )

보험금 지급 기준표

구 分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만기보험금	만기까지 생존해 있을때	적립금액
퇴직보험금	보험기간중 퇴직 하였을때	퇴직보험금
일반사망 보 험 금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때	계약보험가입금액 + 적립금액
교통사망 보 험 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배액 + 적립금액
재해사망 보 험 금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배액 + 적립금액

주)

1. 위의 적립금액은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적립부분의 순보험료를 정기예금이율 + 2%로 부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위의 퇴직보험금은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적립부분의 순보험료를 정기예금이율 + 2%로 부리한 금액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당해 납입해당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납입일로부터 예정 이율로 부리된 금액을 납입 보험료에 가산합니다.

(별표 2)

제해라 분류 표

제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저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 30 호,  
1979. 1. 1. 시행)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류 항 목

분류 항 목	분류 번호
1. 철도 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 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 사고	E 820 - E 825
4. 기타 도로 교통기관 사고	E 826 - E 829
5. 수상 교통기관 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 교통기관 사고	E 840 - E 845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케이블카, 곤돌라 등)	E 846 - 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E 850 - E 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001 내지 799 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E 860 - E 869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 870 ~ E 876
11. 불의의 추락	E 880 ~ E 888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 ~ E 899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순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E 900 ~ E 909 ( 276.5 )
14. 익수, 질식 및 아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킬장해는 제외한다.	E 910 ~ E 915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 916 ~ E 928 ( E 927 )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60 ~ E 969
18. 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E 970 ~ E 978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E 990 ~ E 999
21.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종에 규정한 질병	

( 별표 3 )

장해등급 분류표

등급	신체 장해
제 1 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할 때 4. 충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해) 등급~분류 해설)

###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3.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ㅂ, ㅂ, ㅍ), 치설음(ㄴ, ㄴ,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 중 3 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 중주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4.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별표 4 )

교통재해 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다.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화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제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카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등  
다. 항공기, 선박(돛트, 모터 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등
3. 제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 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 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티널, 교량, 도선시설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